

영등포구의회  
제22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 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0. 5. 11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216호로 2020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구민이 직접 평가하고, 제안하는 구정평가단의 안정적인 참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정평가단 기능(안 제2조)
- 나. 구정평가단 조직구성(안 제3조)
- 다. 구정평가단 단원 임기(안 제5조)
- 라. 구정평가단 위촉 및 해촉(안 제6조)
- 마. 구정평가단 평가 및 회의(안 제7조~제8조)
- 바. 교육, 표창 및 활동지원 (안 제9조~제11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0. 3. 12. ~ 4. 1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평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, 구민이 구정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주요 정책과 서비스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.

○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 기능으로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을 설치하고,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구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시책 제안 등을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였음.

- 안 제3조 내지 4조는 조직구성을 동별 1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총무를 두며, 각 동 단장으로 구성된 구 협의회를 두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5조부터 6조는 임기 및 위·해촉 관련 규정으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하도록 했으며, 동장이 추천하거나 공개모집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.
- 안 제7조부터 11조에서는 평가단의 지원을 위한 조항으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평가사업 및 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, 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표창수여와 평가활동 및 회의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,

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구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, 또한 구정 전반에 대한 환류를 통해 책임의식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책 품질의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-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